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삼 차 원 프 린 텅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 및 공동사용 등 사용권 확보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차수 산정에 필요한 산정 기간 방식을 명확화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확대를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실태조사를 위해 신고 사항에 대표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를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유 현황”을 “보유 또는 임대 및 공동사용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유”를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로 한다.

7. 대표자의 연락처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표자의 연락처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4) 위반행위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3)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 4) 과태료가 소액인 경우
- 5) 위반행위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 략)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u>보유</u>할 것 ③·④ (생 략)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③·④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 -- <u>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대표자의 연락처</u>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236